

제1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0. 4. 13.(화) 10 : 00~

조례안 심사보고서

=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4건 =

산업건설위원회

【 목 차 】

1.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3.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4.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년 4월 5일
- 나. 발 의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년 4월 7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년 4월 14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각종 건축물 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보다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서민주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하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 2)
 - “8가구 이상일 경우 가구당 1대로 산정된 주차대수와 비교하여 많은 대수를 적용한다”는 단서규정 삭제

〈개정내용〉

구 분	현행(전용면적 60㎡ 이하)		개정(전용면적 60㎡ 이하)	
1가구당	총 가구수가 7가구인 경우 : 7가구 × 0.7대	5대	총 가구수가 7가구인 경우 : 7가구 × 0.7대	5대
	총 가구수가 8가구인 경우 : 8가구 × 1대	8대	총 가구수가 7가구인 경우 : 8가구 × 0.7대	6대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이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별표2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에 대한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현행 법령상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를 확보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가구수 대비 8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가구당 1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도록 “삭제” 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개정 내용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거창군 총 인구 및 가구의 50% 이상(인구/62%, 가구/56%)이 거창읍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우리 거창군은 2018년 10만인구 목표달성 계획으로 승강기밸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 88고속도로확장사업, 출산율 제고정책 등 각종 사업성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규 주거지역(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및 기존 주택의 증축·변경 등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로 인하여 오히려 교통번잡이 우려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관계법령 등 행정절차 상으로는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년 4월 5일
- 나. 발 의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년 4월 7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년 4월 14일

2. 제안설명 및 요지

가. 제안이유

-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개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닌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있는 “거창군 지역건설사업발전위원회”에 대하여 그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임.

가.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09.8.13)에 따른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명문화(안 제 6조의2)
 - 위원회의 존속기한: 2009. 12. 30. ~ 2014. 12. 30.

- 거창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위촉원으로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순화함(안 제9조 단서).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만 수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범정부적으로 일자리창출 등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등 실물경제는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내용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동 조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9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에 대하여는 걱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관계법령 등 행정절차상으로는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년 4월 5일
- 나. 발 의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년 4월 7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년 4월 7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수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이상기온 발생과 국가 간 FTA협상 등으로 인하여 일부농산물을 제외한 다수의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또한 농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대책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 현행 농업발전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고, 사업범위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제명변경: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명)
- 조례의 설치목적 확대규정: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비함(안 제2조)
- 기금의 설치근거 마련 및 기금조성 금액 상향 조정, 군 출연금 출연금액 및 방법 규정(안 3조)
 - 기금의 설치근거: 농업인과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지원
 - 기금조성 목표액: 100억원 → 200억원
 - 군 출연금액 방법: 10억원(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
-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2019년 12월 31일까지(안 제3조의2 신설)
- 기금의 용도 규정: 농업인등에 대한 융자 및 보조사업(안 제3조의3 신설)
- “특별회계의 설치 및 기금운용관리”를 “기금의 운용·관리”와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으로 세분화 규정(안 제4조, 안 제4조의2)
 - 융자금의 지원·회수와 채권확보 등 기금용자에 관한 관리 업무 위탁근거 및 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사용근거 마련(안 제4조)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 “심의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

를 신설(안 제5조)

-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용자재원 및 대출”을 “용자 및 보조사업 재원”으로 하고 대상사업에 대한 재원범위를 규정함(안 제7조)
 - 용자재원: 금융기관 지원자금 → 기금조성액과 기금관리수탁 기관의 자금으로 충당
 - 기금지원 보조사업: 기금운용 수익금과 그밖의 수익금으로 지원
- 용자 및 보조사업 대상자 범위 및 보조대상 사업범위 확대(안 제8조)
 - 대상자: “농업인” →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단체(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조합공동 사업법인)
 - 용자대상사업 추가: 농산물가격안정자금 지원
 - 보조대상사업 추가: 경영안정대책비, 생계안정을 위한 경영유지비
- “감독과 명령”을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하고 기금 관리 수탁기관은 협약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토록 규정함(안 제15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와 표현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일부 농산물을 제외한 다수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또한 이상기온 발생으로 인하여 농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농업의 안정적인 성

장과 발전도모를 위하여 기금조성액을 상향 조정(100억원 → 200억원)하고, 보조사업 범위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안 제2조의 내용 중 현행 지원대상인 “농업인”의 한계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단체로 확대한 것은 모든 농업인 등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 농업발전기금 조성목표액을 상향하는 건에 대하여는 기금에 대한 보조사업지원 범위 및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 인하여 더 많은 기금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 조성한 기금의 집행실적으로 보면 총액 97억 4,500백만원중(이자수입 301백만원) 융자금 이자 1억3,800백만원과 농업재해보험료 1억6,200백만원 등 총 3억원만 지출되었음. 이는 원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만 지출한 것으로 기금의 운용적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할 수 있으므로, 향후 100억원을 추가로 더 확보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효율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것인지 추가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문화 하고, 안 제3조의3 기금의 용도를 정비한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 융자금의 지원 및 회수, 채권확보 등 기금융자의

관리업무를 위한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사용 근거를 새로이 정비한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의2 기금관리수탁기관의 용자금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재원, 경영안정 대책비, 경영유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여 명확히 규정한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이 밖에 안 제5조(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안 제6조(기금운용계획), 안 제7조(용자 및 보조사업 재원), 안 제8조(용자 및 보조지원 대상사업 및 용도), 안 제9조(용자 및 보조지원 대상자 선정), 안 제10조(용자 및 보조지원 대상자 통보), 안 제11조(용자 및 보조지원 조건), 안 제12조(이자차액 보전), 안 제13조(용자금 상환기일전 회수), 안 제14조(사후 관리), 안 제15조(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안 제16조(회계관계공무원), 안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은 농업인들에게 지원확대의 폭을 넓히고, 현실여건에 부합되게 부분적으로 개정하고, 용어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한 내용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관계법령 등 행정절차상으로는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0 - 21호>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년 4월 5일
- 나. 발 의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년 4월 7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년 4월 14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상수도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수도용 자재를 종전 관급품에서 「수도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자재로 규정하는 등 관급자재에 대한 특별취급 및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행정안전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공동발굴

나. 주요내용

- 수도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품을 원칙으로 하고, 관급자재의 범위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을 “ 「수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 토록 개정(안 제2조제2항)

- 수도공사에 사용되는 자재가 관급품일 때 시공자재 검사를 하지 않는다. 는 단서조항 삭제(안 제8조제3항)
- 수도공사의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공업자가 급수공사를 착공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로 개정(안 제8조제5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공동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경쟁제한적인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관급품 시공자재에 대하여는 검사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